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562호 2020. 12. 7(월)

차 례

예 규

- 인천광역시서구 예규 제9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 지침 일부 개정 지침 ----- 1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0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3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40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65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2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74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6차) ----- 3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78호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 ----- 33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 지침 일부개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2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예규 제9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 지침 일부개정 지침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성실의무)”를“(성실·청렴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장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제21조제2항 중 “근로자에게는 1개월간 개근할 때”를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로, “준다”를 “주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특별휴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정의 유급휴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 직종별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제1호의 경우가 아닌 근로자 중 계속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준용한다.

②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근로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제25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업무와 관련된 교육 또는 시찰에 참여하는 경우
6. 각 직종별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7.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

제8장에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남녀평등 및 모성보호,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여성 및 임산부 보호에 관한 사항 등) 근로자에 대한 남녀평등 및 모성보호, 산전 후 휴가, 육아휴직, 여성 및 임산부 보호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3조 앞의 “제11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6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보 칙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징계처분 양정기준

징계처분 기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1. 성실근무 관련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근무태도 불량 라. 기 타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2. 업무수행 관련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3. 직장 이탈 관련 가. 무단결근 나. 가타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4. 비밀 누설 관련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5. 성폭력 관련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다. 성희롱성매매 라. 기타		해고 해고	해고 해고	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6. 친절·공정 관련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7. 각종수당 부당수령 관련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비고 : 제5호에서 “성희롱” 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 시간외부당수령자에 대한 시간외근무 금지명령 기간은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징계위원회에서 당연 부여하며 여비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된 경우 1년간 여비 지급을 금지한다.

성실근무·업무수행·직장 이탈 관련 처리 기준

유 형 별	처 리 기 준	
	경 징 계(감봉 이하)	중 징 계(정직이상)
1. 성실근무 관련		
· 근무시간 중 음주 행위	2회 이하	3회 이상
· 무고한 투서 등 화합을 행하는 행위	1회	2회 이상
· 음주 후 근무지내에서 행패	1회	2회 이상
· 근무시간 중 도박 또는 사행성 행위	1회	2회 이상
· 동료 간의 구타 · 폭행 행위	-	1회 이상
2. 업무수행 관련		
· 지시위반자	3회 이하	4회 이상
· 감독 공무원에 대한 폭언	2회 이하	3회 이상
· 감독 공무원에 대한 폭행	-	1회 이상
3. 직장 이탈 관련		
· 무단결근	월 2회 이하	월 3회 이상
· 지각(지참)	월 3회 이하	월 4회 이상
· 근무지 이탈	2회 이하	3회 이상
4. 친절·공정 관련		
· 불친절	월 3회 이하	월 4회 이상
· 불공정	월 2회 이하	월 3회 이하
5. 각종수당 부당수령 관련	2회 이하	3회 이상

청렴한 업무수행 관련 처리기준

비위의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1.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정직-감봉	해고-정직	해고-정직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업무수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정직	해고-정직	해고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업무수행)을 한 경우	해고-정직	해고	해고

※ 비고

1.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2.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음주운전 관련 처리기준

유 형 별	처리기준	비 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1.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중징계	3.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피해 및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중징계	4.음주운전 횡수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종합처분

1. 견책처분 연 3회 이상 : 정직
2. 정직처분 연 40일 이상 : 해고
3. 동일 건에 수개의 위반 행위가 경합 시에는 그 중 중한 징계기준에 의한다.
4. 위반사항이 월중에 연속하여 발생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5. 위반사항 이외에 이에 준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징계 기준을 준용하여 징계할 수 있다.
6. 위반사항 경중에 따라 징계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7. 징계기준 이외에 위반사항이 경미할 경우에는 정직을 대신하여 감봉 처분할 수 있다.
8. “연” , “월” 은 통상 사용력을 기준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20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세어로 25 외 2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12.07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0-12-07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원상동 354-5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로 25 (원상동)	20090922	자연무단행이자 점 이점을 따 명명	
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24	인천광역시 서구 청동로 113 (청라동)	20101111	청라대로 동쪽에 위치	
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56	인천광역시 서구 청동로 171 (청라동)	20101111	청라대로 동쪽에 위치	
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125	인천광역시 서구 청동로 96 (청라동)	20101111	청라대로 동쪽에 위치	
5	인천광역시 서구 급곡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소담2로 2 (급곡동)	20191223	소담로에서 두 번째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겸암동 647-5	인천광역시 서구 도모지로201번길 18 (겸암동)	20090922	도모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60-2, 959-1, 960, 962, 962-1, 962-3, 962-7, 962-8	인천광역시 서구 평당대로608번안길 15 (당하동)	20081231	평당대로608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어있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원상동 391-6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393번길 131 (원상동)	20090706	중봉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9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08-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41번길 25-1 (청라동)	20120330	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4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55-1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61번길 25-5 (청라동)	20140804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무각 및 청라한내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23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로16번길 12 (청라동)	20180827	청사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160M 오른쪽으로 분기된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52-82	인천광역시 서구 아라자전거목길 551 (백석동)	20180827	아라자전거길 목단에서 시작되는 자전거길	
1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5-14	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181번길 9-13 (청라동)	20201012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1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2	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193번길 8-11 (청라동)	20201012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1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4-8	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194번길 9-17 (청라동)	20201012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0-12-07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103 (백석동)	대장말소	20201207	옛 자연부락의 명칭을 사용하여 한들로라 명명	백석영아지트24시편의점
2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105 (백석동)	대장말소	20201207	옛 자연부락의 명칭을 사용하여 한들로라 명명	명품가구갤러리
3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70 (백석동)	대장말소	20201207	옛 자연부락의 명칭을 사용하여 한들로라 명명	미진공예
4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72 (백석동)	대장말소	20201207	옛 자연부락의 명칭을 사용하여 한들로라 명명	거목특수강
5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6로 21 (백석동)	대장말소	20201207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여섯번째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6로 24 (백석동)	대장말소	20201207	한들이란 자연부락 명칭을 반영한 여섯번째 도로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0 - 183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12.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생활화에 따라 비대면 회원가입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도입 근거 마련
 - 전자정부법 및 주소지 파악을 위한 회원가입조건 명시
- 2020년 6월 책이음 서비스 도입 후 전국 공공도서관 회원정보를 공유
 - 서구 공공도서관에서만 인천시 공공도서관 중 유일하게 가입서류로 사진을 요구하고 있어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위하여 사진요구 조항 삭제
- 필요서류 간소화로 이용고객 편의 증진

2. 주요내용

- 제4조(회원가입) 회원 자격조건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근거를 마련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함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교육혁신과, 전화 560-5914, 팩스 560-27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생활화에 따라 비대면 회원가입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도입 근거 마련
 - 전자정부법 및 주소지 파악을 위한 회원가입조건 명시
- 2020년 6월 책이음 서비스 도입 후 전국 공공도서관 회원정보를 공유
 - 서구 공공도서관에서만 인천시 공공도서관 중 유일하게 가입서류로 사진을 요구하고 있어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위하여 사진요구 조항 삭제
- 필요서류 간소화로 이용고객 편의 증진

2. 주요내용

- 제4조(회원가입) 회원 자격조건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함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3. 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4. 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②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과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회원증을 재발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홈페이지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거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절차를 거친 후 제1항의 자격을 증빙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학생증, 청소년증,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2.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는 미성년자) 1부.
3. 재직증명서(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④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2항에서 요구하는 행정정보의 경우 회원 가입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회원가입)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홈페이지를 통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치거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p> <p>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현주소 미기재 신분증 제시자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 1부</p> <p>2.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1매 (크기 3cm × 4cm)</p>	<p>제4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p>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p> <p>2. 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p> <p>3. 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p> <p>4. 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p> <p>②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과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회원증을 재발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홈페이지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거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p> <p>③ 제2항의 절차를 거친 후 제1항의 자격을 증빙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p> <p>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학생증, 청소년증,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p> <p>2.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는</p>

미성년자) 1부.

3. 재직증명서(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④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2항에서 요구하는 행정정보의 경우 회원 가입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관계 법령 발췌

□ 「전자정부법」(시행 2020. 8. 5.)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 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2. 통계정보, 문헌정보, 정책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
3. 행정기관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0 - 1840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12.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시설 사용료 기준은 시간당 계산인데 반해 환불 규정은 일할 계산 전액 환불로 무분별한 신청과 취소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 위약금 제도로 무분별한 신청 및 취소로 인한 행정력 낭비 최소화

2. 주요내용

- 제7조(수수료 등) 제2항 사용료별 환불 규정을 세분화하여 구민의 편의증진과 행정력 낭비 최소화를 도모함
 -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 사물함 사용료 반환 기준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교육혁신과, 전화 560-5914, 팩스 560-27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시설 사용료 기준은 시간당 계산인데 반해 환불 규정은 일할 계산 전액 환불로 무분별한 신청과 취소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 위약금 제도로 무분별한 신청 및 취소로 인한 행정력 낭비 최소화

2. 주요내용

- 제7조(수수료 등) 제2항 사용료별 환불 규정을 세분화하여 국민의 편의증진과 행정력 낭비 최소화를 도모함
 -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 사물함 사용료 반환 기준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법령 발취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반환기준은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일할계산으로 반환한다”를 “반환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설 사용료 반환은 사용 취소 요청을 신고한 날이 사용예정일의 3일 전 일 경우 전액 반환하며 3일 미만인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 후 반환한다. 다만, 사용 개시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취소 요청을 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 후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일할계산으로 반환한다.
2. 사물함 사용료는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일할계산으로 반환한다.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나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는 전액 반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수수료 등)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u>반환기준은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일할계산으로 반환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u></p> <p>1. <u>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u></p> <p>2. <u>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u></p> <p>3. <신 설></p> <p>③ (생 략)</p>	<p>제7조(수수료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u>반환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후단 삭제></u></p> <p>1. <u>시설 사용료 반환은 사용 취소 요청을 신고한 날이 사용예정일의 3일 전일 경우 전액 반환하며 3일 미만인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 후 반환한다. 다만, 사용 개시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취소 요청을 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 후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일할계산으로 반환한다.</u></p> <p>2. <u>사물함 사용료는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일할계산으로 반환한다.</u></p> <p>3. <u>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나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는 전액 반환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인천광역시 서구 제2020-1865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12.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20. 12. 7. ~ 2020. 12. 21.(15일간)

2. 공 고 내 용

1. 행정처분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상차량	등록번호	25년6981 외 8건(붙임 참조)		
	차 명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5747, FAX 032-560-2793)		

3. 유 의 사 항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2)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3)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무등록 자동차)를 운행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4.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 032-560-5747)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1	25너6981	링컨MKX	한*애외1인	2020.11.02
2	03수4047	카이런	김*욱	2020.11.02
3	52누7155	렉서스 ES350	이*우	2020.11.16
4	38나0657	그랜저 (GRANDEUR)	임*미	2020.11.17
5	05저8791	쏘렌토	한*호	2020.11.17
6	경기3쿠7616	포텐사오토	한*호	2020.11.17
7	43모7377	BMW 320d xDrive	오*욱	2020.11.17
8	인천730아1433	BX212	**고속관광(주)	2020.11.26
9	56가4771	A6 45 TDI quattro	김*민	2020.11.28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 - 1874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6차)

『검단산업단지~검단IC간 도로개설공사』 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6차)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0. 12.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사 업 명 : 검단산업단지~검단IC간 도로개설공사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인천종합건설본부장)
- 열람기간 : 2020.12.07. ~ 2020.12.22.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기반과, ☎ 032-560-4485)
- 의견제출기간 : 2020.12.07. ~ 2020.12.22.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221-17번지 및 411-9번지 상 지장물
 - 물건소유자 : 김*경(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 216번길4)외 1명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221-17번지 및 411-9번지 상 지장물 총 20건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의견서	
<input type="checkbox"/> 사업명 : 검단산업단지~검단IC간 도로개설공사	
1. 제목	수용재결신청 의견 제출(6차)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0. . .</p> <p>의견 제출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핸드폰 :</p> <p>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p>	
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 - 1878호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4-218호(2004.12.06.)로 경서2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294호(2008.12.08.)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었으며,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2427(2020.11.18.)호로 공사완료 공고된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지처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우리 구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환지처분 통지서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 받지 못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 12.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명: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272번지 일원
3. 사업면적: 34,012.4m²
4. 시행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5. 시 행 기 간 : 2008.12.08. ~ 2020.12.07.

6. 환지처분일 : 2020년 12월 07일

7. 사업비 정산내역(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그 밖에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포함)

- 수 입

구	분	금 액 (백만원)	비 고
총	계	9,323	
체 비 지 매 각 수 입		13,825	
市 보 조 금		400	
과 도 징 수 금		-	
부 족 교 부 금		△ 5,056	
기 타 수 입 금		154	

- 지 출

구	분	금 액 (백만원)	비 고
총	계	9,323	
조 사 설 계 비		1,160	· 측량비, 용역비, 기타 조사비 등
공 사 비		2,922	· 단지 및 공원 조성공사 등
보 상 비		3,079	· 지장물 보상 등
기 타 비 용		2,162	·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상·하수도 원인가부담금 등

8. 기타일반사항

가. 환지처분공고로 종전의 토지는 환지처분 내역과 같이 변경되며 「도시개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나. 사업구간 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변동은 「도시개발법」 제43조 규정에 의해 환지처분 공고된 날부터 환지처분에 따른 등기완료 시까지 다른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팀(☎ 032-560-47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